



수업년한 연장에 관한 규칙

규정번호	3-3-11		
제정일자	2003.03.01		
개정일자	2012.04.30		
개정번호	Ver.4	총페이지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업년한이 2년제에서 3년제로 변경된 학과의 학생중 2년제 모집 단위로 입학한 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휴학하였다가 복학하게 된 때 수업년한을 3년제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 및 승인 시기) ① 수업년한 연장 신청시기는 2학년 1학기 개시 후 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② 수업년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은 신청만료 기간으로부터 2주 이내에 확정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제3조(승인 기준) 수업년한 연장 승인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해 각 학과 또는 학부(전공)별로 정하되 총장의 허락을 받아 확정한다.

1. 수업년한 연장 신청자
2. 지도교수 면접
3. 기타 학부(과)에서 따로 정하는 기준

제4조(복학생의 신청 기간) 종전의 2년제 학과에 입학하여 휴학하였던 자가 휴학기간 중에 수업년한이 3년제로 변경되어 수업년한 연장을 원할 때에는 2학년 2학기 수강신청 이전 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업년한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수업년한 연장의 제한) ① 3년제 학과가 2학년 2학기에 편제되지 않았을 시는 수업년한 연장 신청을 불허한다.

② 2학년 2학기 개강 이후부터는 수업년한 연장 신청을 취소 또는 추가로 신청할 수 없다.

제6조(규칙의 개정) 이 규칙은 교무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허락을 받아 개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수업년한 연장에 따른 전과자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 3년제 학과가 편제된 이후 3년제 학과로 전과한 학생은 전과와 동시에 수업년한 연장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3) (졸업보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졸업보류가 된 학생은 수업년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없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학적 제 호]

지도교수	학부(과)장

수업년 한 연장신청서

결 재	계	팀 장	부처장	처 장	부총장	총 장
				전결	/	

학 번		학부(과)전공		학년		부 주, 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연락처	(집)	
					(HP)	
총 이수학점계			총평균평점	/4.5		

상기 본인은 당초 2년제로 입학하였지만 수업년한을 1년 더 연장하여 3년제로 졸업을 하고자 보호자 연서로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학 생 : _____ (인)

보호자 : _____ (인)

동양미래대학교총장 귀하

※ 첨부서류 : 없음